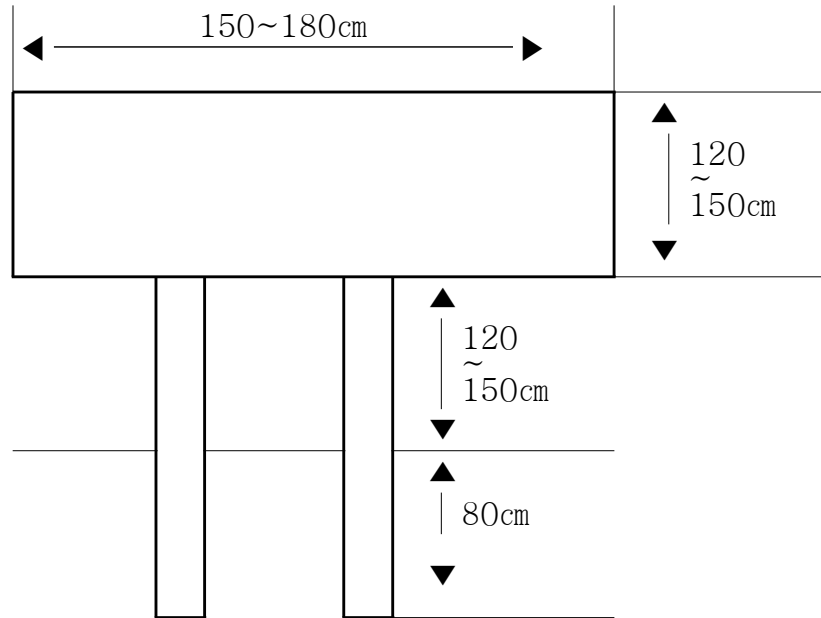


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(제29조 관련)

1. 안내판의 규격



- 두께 및 재질: 3밀리미터 또는 4밀리미터 두께의 철판
- 바탕색: 청색
- 글씨: 흰색

2. 안내판의 내용

가. 낚시금지구역

알림

1. 이 지역은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금지구역입니다.
2. 낚시금지구역에서는 하천·호소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낚시행위가 모두 금지되며, 이를 위반하여 낚시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「물환경보전법」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○ ○ 시장·군수·구청장

○ ○ 경찰서장

나. 낚시제한구역

알림

1. 이 지역은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제한구역입니다.
2. 낚시제한구역에서는 하천·호소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아래의 행위가 금지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「물환경보전법」 제82조제3항제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아래

- 가.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·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
- 나.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등 「낚시어선업법」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
- 다. 1명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
- 라.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 바늘을 떡밥과 묶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
- 마.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행위를 하거나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·소변을 보는 등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
- 바. 고기를 잡기 위하여 폭발물·배터리·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
- 사. 「내수면어업법 시행령」 제17조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금지행위
- 아.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밖에 시·군·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

년 월 일

○ ○ 시장·군수·구청장

○ ○ 경찰서장

비고 : 제2호사목 및 아목은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적는다.